

경희 Fellow 규정

시행일 : 2024.09.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경희 Fellow의 종류, 자격, 선정절차,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대상) ① 경희 Fellow는 경희 Fellow(연구)와 경희 Fellow(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경희 Fellow(연구)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업적이 우수하여 총장이 선정한 자를 의미하며, 연간 일정 인원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③ 경희 Fellow(교육)이라 함은 본교 전임교원 중 교육업적이 탁월하여 총장이 선정한 자를 의미하며, 연간 5명 이내의 인원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는다.

제3조(선정) ① 경희 Fellow(연구)는 경희 Fellow(연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② 경희 Fellow(교육)은 경희 Fellow(교육)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제4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경희 Fellow(연구)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양 캠퍼스 학무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처 연구진홍팀장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평가계열별 3인 이내로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하여 총 15인 이내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제4조 1항 4호와는 별도로 위원장 추천으로 평가계열별 1인 내외의 탁월한 연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7.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경희 Fellow(교육) 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양 캠퍼스 학무부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 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양 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거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교육업적이 탁월한 본교 전임교원 중 계열(인문사회·예술체육, 자연과학·공학, 의학)을 고려한 10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선정위원회와 별도로 심사기준 및 추천방식 보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개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7.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정절차) ① 경희 Fellow(연구)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구처장은 매년 대학(원)장에게 경희 Fellow(연구) 추천을 의뢰하고, 대학(원)에서는 교원인사소위원회를 통해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연구처장에게 송부한다.
 2. 연구처장은 대학(원)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연구실적 등의 자료를 경희 Fellow(연구) 선정위원회에 제출한다.
 3. 경희 Fellow(연구) 선정위원회는 당해연도 선정심사기준을 확정하고 대학(원)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한다.
 4. 경희 Fellow(연구)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② 경희 Fellow(교육)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무처장은 매년 대학(원)장에게 경희 Fellow (교육) 추천을 의뢰하고,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송부한다.
 2. 교무처장은 대학(원)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교육업적 등의 자료를 경희 Fellow(교육) 선정위원회에 제출한다.
 3. 경희 Fellow(교육) 선정위원회는 대학(원)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4. 상기 절차와 관계없이 경희 Fellow(교육) 선정위원회에서 경희 Fellow(교육) 후보자를 추천하여 검증할 수 있다.
 5. 경희 Fellow(교육)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선정기준) ① 경희 Fellow(연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업적(논문, 저역서, 산학협력실적 등)의 양적·질적 요소를 평가하며 세부 기준

은 경희 Fellow(연구)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경희 Fellow(연구)는 재직기간 중 재선정 될 수 있다. 다만, 재선정 심사에는 직전 선정 심사에 활용된 연구업적은 제외한다.
- ② 경희 Fellow(교육)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업적 및 공헌도(강의 수월성, 교육 혁신, 학생 소통 등)의 양적·질적 요소를 평가하며 세부 기준은 학문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희 Fellow(교육)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2. 경희 Fellow(교육)은 재직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선정될 수 있다.

제7조(구비서류) ① 경희 Fellow(연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별표1]
 2. 대학(원)장 추천서 [별표2]
 3. 관련분야 국내외 전문가의 추천서
 4. 연구실적물
- ② 경희 Fellow(교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표3-1 또는 별표3-2]
 2. 교육활동보고서 [별표4]
- ③ 연구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①항 이외의 서류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④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②항 이외의 서류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처우 등) ① 경희 Fellow(연구)에 선정된 교원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선정된 교원에 대하여 2년간 경희 Fellow(연구)자격을 부여하고, 연구격려금을 지급한다.
 2. 강의 책임시수는 2년간 전임교원 연간책임시수의 6시수를 감면한다.
- ② 경희 Fellow(교육)에 선정된 교원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선정된 교원에 대하여 1년간 경희 Fellow(교육)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격려금을 지급한다.
 2. 선정된 교원은 차년도 종합시간표에 '경희 Fellow(교육) 선정자'로 표시하고, 해당 년도에 조교 I형을 1년 지원 한다.
 3. 선정된 교원에게 선정된 년도에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교수업적평가 교육점수를 부여한다.
 4. 선정된 교원의 요청 시 온라인 강의 개발 및 강좌 개설을 지원한다.

제9조(주관부서) ① 경희 Fellow(연구)에 관한 사항은 연구처장이 관장한다.

- ② 경희 Fellow(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관장한다.

제10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희 Fellow(연구) 신청서

1. 연구자 정보

파 추 천 인	성명		
	소속		직급
	연구분야		
기간		주요 경력사항 (최근 순)	
yyyy.mm.dd~yyyy.mm.dd			
일자		주요 수상/수훈 기록 (훈·포장 및 기타 / 최근 순)	
yyyy.mm.dd.			
주요 연구 업적 요약 (300자 내외 개조식)			
※ '학문적 업적 및 연구개발 성과의 탁월성', '국가·사회 발전 기여도(공익성·공공성)' 등 의 측면에서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주천인 :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2. 학문적 업적 및 연구개발 성과

2.1 논문 목록(대표실적 5개 이내, 최근 순)

연번	논문제목	발표지명 (제재권호, 0년 0권 0호)	저자구분 (교신 또는 제1저자 한함)	Impact factor	총 인용횟 수	실적 등급
1						
2						
3						
4						
5						

※ 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2.2 특허 목록(사업화된 대표실적 5개 이내, 최근 순)

연번	특허명	구분 (국내/ 외)	등록 (출원)일	특허자	공동 발명자 (000외 0명)	등록 (출원) 번호	기술이전 실적 또는 활용도
1							
2							
3							
4							

5							
---	--	--	--	--	--	--	--

※ 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2.3 저서 목록(대표실적 5개 이내, 최근 순)

연 번	저서명	발행처 (출판사)	ISBN번호	발행일자 (0000- 00-00)	비고 (번역서, 집필서)	총 발행권수 또는 판매량
1						
2						
3						
4						
5						

※ 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2.4 대외연구과제 수주실적(대표실적 5개 이내, 최근 순)

연 번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지원기 관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천원)	비고
1					
2					

3					
4					
5					

※ 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별표2]

경희 Fellow(연구) 추천서

피 추 천 인	성명			
	소속		직급	

※ 최근 00년간 연구실적 목록(INFO21 출력본) 별도 첨부 (2000.01.01~2000.12.31)

추천사유 :

2000. . .

추천인 (○○대학(원)장) :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3-1] 단과대학(원) 추천서
경희 Fellow(교육) 추천서

추천구분	[단과대학(원) 추천]			
피추천 대상	성명		직급	
	소속			
추천사유	<p>※ 지면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p>			

상기와 같이 경희 Fellow(교육)를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학(원)장 : _____ 대학(원) 성명 : _____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3-2] 경희Fellow(교육) 선정위원회 추천서

경희 Fellow(교육) 추천서

추천구분	[경희Fellow(교육) 선정위원회 추천]		
피추천 대상	성명		직급
	소속		
추천사유	※ 지면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		

상기와 같이 경희 Fellow(교육)를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위원성명 : _____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4]

경희 Fellow(교육) 교육활동보고서

※ 본 교육활동보고서는 5page 이내로 작성

작성자 (피추천 자)	성명		직급	
	소속			
교육활동	1) 강의수월성 관련			
	2) 교수방법개발 및 교육혁신노력 관련			
3) 학생 소통 및 학생 지원				
4) 교육 공헌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 작성자 : (인)				